[서식 1]

하도급 개별계약 적법성 심의 Check Sheet

현장명(CODE NO) :	심의 일자 :
공 종 (품 명) :	심의 위원 :

심의 항목	주요 심의 내용	심 의		시정내용
		적합	부적합	
서면 계약서 교부	- 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의무(계약금액, 위탁일 위탁 내용, 납품일/장소, 대금지급방법, 지급일, 검사방법)			
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	-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			
	-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			
	-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			
	-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			
	- 다량발주를 전제로 견적하도록 한 후,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			
	- 대금을 정하지 않은체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,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			
	-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후,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			
	-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			
물품 등의 강제 구매금지	-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,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			
	-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.장비를 구입 사용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			
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금지	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			